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7. 6. 2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 235호로 2017년 6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반영 및 주요사업 투자심사, 재정공시를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유사·중복 위원회의 증가 방지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영등포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용 추가(안 제7조)

- 주요사업 투자심의에 관한 사항
-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4조, 안 제25조, 안 제27조제2항, 안 제28조제2항 제7호, 안 제28조제6항, 안 제29조제2항)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은

- 안 제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능 중, 주요사업 투자심사,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였고,
- 기타 조문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되, 민간위원 및 성별의 비율, 임기 등을 제외하고, 기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는 유사·중복 위원회의 증가 방지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며,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 고 자 료

## 1

## 지방재정법

-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 제32조의11(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법 제32조의8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명령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

③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6.28.]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 가. 교부현황
  - 나. 성과평가 결과
  -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



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3.>

[전문개정 2014.5.28.]

[제목개정 2015.5.13.]